

2024년도 제6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4. 4. 22. 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분과위원장), 송수현, 오영주, 최태경, 홍승기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4-60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안건 2,748건(5,033개 게시물, 안건번호 제2024-44596호~47343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4-44596호(순번 1번)는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44597호~44608호(순번2번~13번)는 중고거래 사이트등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안건번호 제2024-44609호~47343호(순번 14번~2748번)는 모두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다만 위 사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함.

III.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68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4-6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박현주 전문위원: 제1호 안전 회의록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B 위원: 제1호 안전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온라인서비스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전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박현주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전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람.
- 박현주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4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5,033개의 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로 총 2,748건의 안건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번은 민원인들이 신고한 사안으로 ○○○ 카페에 영상 불법복제물 1건을 게시하고 있는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번~1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출판물을 스캔한 PDF파일을 중고거래 사이트 '●●●●●' 및 ○○○ 카페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안이며 총 32개의 게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4번~2748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영상,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이며 총 5,000개의 게시물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1번은 ○○○ 카페에 영상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B 위원: ○○○ 카페가 공개형 카페인지 가입이 엄격한 형태인지 질의함.
- 문수지 주임: 회원 가입해야 접속할 수 있는 비공개형 카페로 현재 106명 정도 가입되어 있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해당 건은 데드카피 건으로 순번 1번에 대하여 가결 의견이며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2번~13번은 중고거래 사이트 및 ○○○ 카페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거래중인 사안으로,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검토 의견에 동의하며 가결 의견임. 다만 EBS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한 교재에 관하여 확인하였는지 질의함.
- 박현주 전문위원: 심의 안건상의 무료로 배포된 교재는 찾지 못하였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현재 EBS는 회원 로그인을 해야 확인할 수 있어 들어가보지 못했지만, 교재를 무료로 배포하더라도 재배포는 할 수 없음. 또한 금번 안건 중 간호학과 관련된 도서는 요양보호사 시험용으로 이용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위원님들께서는 순번 2번~13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번~13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14번~2748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영상,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이며 총 5,000개의 게시물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출판, 소프트웨어,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영화 '쿵푸팬더4'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153번은 영화 '쿵푸팬더4'를 310포인트로 판매중인 사안으로, 해당 영화는 올해 4월 10일 국내 개봉한 최신영화로 지금도 현재 극장에서 상영 중이고 박스 오피스 1위 작품임.
(PC패키지게임 '퍼시픽 드라이브 Pacific Drive'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682번은 PC게임인 퍼시픽드라이브임. 퍼시픽드라이브는 2월 22일 출시된 게임으로 에픽게임즈라는 사이트에서 32,000원에 구입 가능한 제품임. 현재 웹하드에서 1760포인트로 판매되고 있음. 퍼시픽드라이브의 경우 최신 게임 중 인기 5위 정도의 굉장히 큰 인기를 끌

고 있는 게임임.

(소프트웨어 'Adobe Premiere Pro CC 2024'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748번은 소프트웨어 'Adobe Premiere Pro CC 2024'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어도비 홈페이지에서 월 38,000원에 구독할 수 있음. 현재 웹하드에서 크랙버전을 210포인트에 판매중임.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14번~2748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 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4번~2748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4-44596호~47343호(순번 1번~2748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

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8쪽부터 11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4-2886호~3037호(순번 1번~152번)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o 박재화 분과위원장이 제6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4년 제6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4. 29.

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송수현

 위원 오영주

 위원 최태경

 위원 홍승기